

**國民保健 危害 防止와
畜産農家의 經濟的 利益에 對한 意見**

□ 國民의 健康이 經濟적 논리보다 우선

사료첨가제는 각종 동물질병의 예방, 치료, 성장촉진, 결핍물의 보충, 사료효율 증진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으로 그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가축들에게 장기간 투여된다. 특히 다화학·집단화되어 있는 축산환경에 있어서 가축의 사료에 사료첨가제를 혼합하여 급여하는 것이 일반화 됨에 따라 사료첨가제의 사용량은 치료용 약품의 사용량 보다 훨씬 많아지게 되고, 급기야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로 축산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한편 근래에 와서는 축산물에서의 내성균 출현, 약제잔류와 중금속 오염 등으로 사람의 건강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EU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는 사료첨가제를 비롯한 동물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규제와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축산물 위생 및 국민 보건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렇듯 자칫 잘못 사용되면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와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료첨가제'를 단지 비용절감이라는 경제적 논리를 내세워 사료로 이관하여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취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료업체의 주장은 대의적인 차원에서 설득력을 상실하고 있다.

'사료첨가제'의 이관문제는 92년 이후 거의 해마다 단미사료 업계에서 이관을 주장하여 그동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쇄신위원회, 감사원 등 몇 차례에 걸쳐 논의 되었으나 현행대로 동물용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러한 결정의 근거로서는 '사료첨가제는 약사법에 의한 명백한 의약품으로 사료로 취급될 수 없으며, 특히 오·남용으로 의해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줄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적정사용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하여 엄격한 관리가 요구 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정부가 구성되고 일련의 개혁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료업체와 일부 관계 공무원들은 이상과 같은 결정이 불과 1년전에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등에 업고 '사료첨가제'의 이관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자칫 업계간 잇권다툼으로 인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한 자제하여 왔으나 국민건강을 도외시키고 경제적 논리만을 추구하는 사료업체와 자세한 내막도 알지 못하고 무엇이 축산농가의 진정한 이익인지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채 부하뇌동하는 일부 농업관련 단체들의 편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축산농가의 이익이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진다면 '사료첨가제'가 비록 의약품이라 할 지라도 사료업체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료의 위생과 안전성 및 품질관리가 확보되지 않은 채, 현행 사료관리법 체제하에서 의약품인 '사료첨가제'를 굳이 이관코자 기도한다면 결국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행위는 축산농가의 부담 경감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국민의 건강이야 어찌되건 축산농가가 피해를 보건 말건 자신들만의 이익을 취하려는 무책임한 행위인 것이다.

사료업체의 이러한 행위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동물약품 업계의 이익을 떠나 축산농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 할것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 축산농가의 이익을 위해서도 '사료첨가제'는 동물약품으로 분류

축산농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좋은 품질의 사료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좋은 품질의 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원료와 적절한 생산시설 및 품질관리가 요구되며 사료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제조원가 및 유통비용의 절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해 저질원료를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일정한 사료품질이 유지되는 가운데 사료가격이 낮아져야만 축산농가의 이익이 보장되는 것이다.

품질관리 능력에 있어서 동물약품업체와 사료업체를 비교하여 보면 그 차이는 명확하게 드러난다. 동물약품 제조업체는 모든 회사가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설비와 품질관리 설비를 갖추고 약사, 수의사 등의 전문가들에 의해 의약품이 제조·관리되고 있으며 2001년까지 품질관리우수업체(KVGMF)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어 제조 및 품질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데 비해, 사료업체는 사료관리법에 의해 시설 및 품질관리를 하게 되어 있으나 시설기준 자체가 구체적이지 못하며 특히 사료의 검사 등 품질관리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몇몇 업체가 공동으로 검사인원과 시설을 갖추거나 품질검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각 업체별 품질관리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사료업체의 사료 품질관리 능력이 신뢰할 수 없는 상태이고, 정부의 사료관리 역시 사후약방문 격으로 느슨한 현실에서 아무런 법적·제도적 개선없이 '사료첨가제'를 이관한다면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게 될 것이며 그 최대 피해자는 축산농가가 될 것이다.

저질사료로 인한 가축의 성장지연, 저질축산물 등은 축산농가에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힐 뿐만아니라 만에 하나 '우유내 항생제 잔류' 등의 경험에서 본 바와 같이 축산식품의 안전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면 국민들의 축산물 소비 외면으로 축산농가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품질과 안전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관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축산농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사료업체에서 주장하는 비용절감의 측면에서도 크게 나아질 것이 없어 보인다. 실제 동물약품 제조업을 겸하고 있는 P사, J사 등의 사료업체는 직접 사료첨가제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약품 제조업체에서 사료첨가제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 제조과정상의 여러 어려움과 원료구매에 따른 인원과 자금의 추가적인 소요 등으로 직접 제조하는 것이 오히려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면에서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료업체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현재 라이신, 메치오닌, 비타민 등의 의약품은 8%의 기본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반면 이를 사료원료로 분류하여 수입하는 경우 98년 기준으로 라이신과 메치오닌은 14.6% 비타민은 17.6%의 높은 관세를 적용받아 아래 표와 같이 원가를 상승시키게 될 것이다.

구분	원가계산	금액(원)	비고
비타민	사료원료	37,140,862 * 17.6% + 1,400 * 3%	5,141,488,492원
	동물약품	37,140,862 * 8% + 1,400 * 3%	
메치오닌	사료원료	14,000,472 * 14.6% + 1,400 * 3%	1,527,627,586원
	동물약품	14,000,472 * 8% + 1,400 * 3%	
라이신	사료원료	6,949,600 * 14.6% + 1,400 * 3%	661,407,908원
	동물약품	6,949,600 * 8% + 1,400 * 3%	
비용 증가 금액		7,330,523,986원	

*원가계산 : 97년 수입금액(\$) * 관세 * 환율(1400원) * 제조경비(3%)

위와 같이 '사료첨가제'를 사료로 분류한다면 비용절감은 커녕 오히려 비용증가만 불러오게 되어 결국 축산농가의 부담만 더욱 가중될 것이 분명하다.